

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, 청소년단체, 언론계, 학계, 종교계, 체육계,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 3 조(운영) ①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을 통괄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
2.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
3.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, 관리 및 지원
4. 청소년단체의 육성, 지원
5.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.

제 4 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조(지도위원) ① 본위원회 산하 각종 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.)을 둘 수 있다.

②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인 이내로 하되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, 지도위원이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 6 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소관 과장으로 한다.

제 7 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9 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폐지조례)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.